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 제17686 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2년 7월 27일

국무총리 장 상
 서리
 국무위원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 개정이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업무를 전기판매사업자외에 한국전기안전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영업개시전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3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p>제19조(전력거래) ① (생략)</p> <p>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p> <p>③ (생략)</p>	<p>제19조(전력거래) ①(현행과 같음)</p> <p>② _____ _____ _____ 50퍼센트 _____ _____.</p> <p>③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42조의2(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p>

현행	개정
<p><신설></p>	<p>이 정하는 <u>전기설비</u>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u>전기설비</u>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육용 설비 또는 시설</p> <p>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p> <p>나.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시설</p> <p>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p> <p>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명용 또는 신호용 설비</p> <p>가.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설치한 조명용 설비</p> <p>나. 문화재 또는 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경관조명용 설비</p> <p>다. 교통신호·도로표시·해공로(海空路)표시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신호용 설비</p> <p>3.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p> <p>제42조의3(다종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법 제66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락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p> <p>② 법 제66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p> <p>2.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p> <p>3.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p>

현 행	개 정
<p><u><신 설></u></p>	<p>4.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의 의한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p> <p><u>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u>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시 당해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p>
<p><u><신 설></u></p>	<p><u>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u> 법 제7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선로의 이설비용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설계획에 의하여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 이설비용의 전액면제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경우 :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p>
<p><u>제45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요건)</u> ① 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별표 2의 기준을 갖춘 것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할 것 ② 법 제7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p>	<p><u>제45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u> ① 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의2의 요건을 갖춘 것 2. 법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②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p>

현행	개정
<p>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별표 3의 장비를 갖추는 것 	<p>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2의 요건을 갖추는 것 2. 법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들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③ 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p>제46조(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등록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사업구역은 당해 대행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p>〈삭제〉</p>
<p>제47조(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p> <p>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5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p>〈삭제〉</p>



현행	개정
<p>4. <u>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u></p> <p>5. <u>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u></p> <p>제48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중지기간) 법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4. (생략) <u><신설></u></p> <p>② ~ ③ (생략) <u><신설></u></p> <p>제6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p> <p>① (생략)</p> <p>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삭제></p> <p>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1.~4. (현행과 같음)</p> <p>5. <u>법 제10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u></p> <p>제6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생략)</p>	<p>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p> <p>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p> <p>③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p>

[별표 1의2] <신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 (제45조제1항관련)

구 분		구 비 요 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5명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10명 이상 ○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명 이상 	
3. 장비	공용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연내력시험기(직류60KV 또는 교류30KV) : 1대 ○ 절연유내압시험기 : 2대 ○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Ω) : 3대 ○ 특고압 COS 조작봉 : 3대 ○ 절연장화 : 5족 ○ 계전기시험기 : 2대 ○ 절연유산가측정기 : 2대 ○ 회로시험기 : 3대 ○ 고압절연장갑 : 5족 ○ 절연안전모 : 5개
	개인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MΩ), 클램프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을 제외한다) 1명당 각 1대
<p>비 고</p> <p>1.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p> <p>2. 위 기준중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p>		

[별표 2]

(제63조제3항관련)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
(제45조제2항관련)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	도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금액)	2천 5백만원	1천 2백만원
2. 기술인력	○ 기사(명)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5 2 3
	○ 안전관리보조원(명)	1
3. 장비(종)	10	10
○ 개인장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MΩ)	7	5
- 접지저항측정기	7	5
- 클램프메타	7	5
- 저압검전기	7	5
- 고압 및 특고압 검전기	7	5
○ 공용장비		
-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Ω)	1	1
- 계전기시험기	1	1
- 절연유내압시험기	1	1
- 절연유산가측정기	1	1
- 특고압 COS조작봉	1	1
비 고		
1. 전기기사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거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을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실과 영업소 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장소마다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3]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제45조제3항관련)

장 비	수 량
○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MΩ)	1
○ 접지저항측정기	1
○ 클램프메타	1
○ 저압검전기	1
○ 고압 및 특고압 검전기	1
○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Ω)	1
○ 계전기시험기	1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 등의 조사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200만원
2.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108조 제1항제1호의2	200만원
3.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한 명령에 사용한 자	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3	200만원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200만원
5.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200만원
6.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6조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허위의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108조 제2항 제1호	80만원
7.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 제2항 제2호	50만원
8. 법 제18조제2항 또는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 제2항 제3호	50만원
9. 법 제61조제2항 또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법 제108조 제2항 제4호	80만원
10.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주거용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08조 제2항 제6호	80만원
11. 법 제73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 제2항 제7호	50만원
12.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 제2항 제8호	30만원

<끝>